

의안번호	제 292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3월 일 (제 307 회)

**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
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**

발 의 자	김영주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12년 2월 23일

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2월 23일

발 의 자 : 김영주, 최병윤, 김양희
박종성, 유완백, 정지숙
심기보

1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는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도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1999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, 수탁기관인 충청학원으로부터 위탁운영기간 만료('11.12.31)에 따른 협약해지를 요청함
- 체력측정 등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건강측정의 신뢰도 저하, 장비개선 및 시설확보 예산과 다 소요(10억원, 연 운영비 4억원),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등과의 차별화 곤란, 적정 수탁단체 선정 어려움 등으로 센터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
- 나. 관련부서 의견수렴 : 의견수렴 과정 거침
- 다.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- 라. 예산조치 : 예산조치사항 없음.
- 마.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- 바. 부패영향평가 : 이견 없음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

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